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7,340,911	16,720,227
일반회계	500,661,976	15,019,859
특별회계	56,678,935	1,700,368
공기업특별회계	30,089,437	902,683
상수도공기업	15,336,519	460,096
하수도공기업	14,752,918	442,588
기타특별회계	26,589,498	797,685
이원지구간척사업	615,000	18,4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62,700	172,881
의료급여기금운영	629,542	18,886
주민소득지원사업	2,409,450	72,284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278,500	8,355
관광경영개발사업	54,000	1,620
수산자원조성	13,457,860	403,736
학교급식지원센터	3,382,446	101,47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